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참여 단체 공모 요강

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우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문화예술 기획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청년 문화예술 기획 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 청년들의 삶에 기초한 일과 놀이가 콘텐츠가 되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과정 지원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지원사업 운영기간: 4월 ~ 12월(9개월)
- (지원규모) 전국 17개 단체(1개 팀당 1천만원 ~ 2천만원 지원)

2] 세부 사업 내용

①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 신청 자격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문화예술기획자 그룹**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4항 / 만 나이 기준일(2021.01.01. 기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연속단체) 화상 인터뷰 심의 / (신규단체) 1차 서류 심의, 2차 심의 워크숍 추진

※ 연속 지원 단체는 신규 단체 심의 전, '19년 ~ '20년도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 진행

- 지원내용

- (개발지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행사운영비, 기자재 및 임차료, 행사운영에 필요한 여비, 기획 사례비, 홍보비, 기록비 등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
- (과정지원) 참여 단체 네트워킹 지원, 과정/활동 공유 워크숍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주 기획자로 제안된 3인 기획자 전원)

② 지역문화우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전워크숍) 지역문화우리 사업 참여자 별 운영 계획 공유, 전년도 사례 공유, e나라도움 교육 등
- (중간/최종워크숍) 지역문화우리 선정 단체 중간 / 최종 콘텐츠 공유회(총 2회)
- (스터디모임)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개 권역별 자율 주제 스터디 모임

③ 지역문화우리 사업 연구 및 홍보

- (연구) 지역문화우리 사업 성과 도출 및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 방향 적절성 연구
- (홍보) 지역문화우리 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로 사업 성과 확산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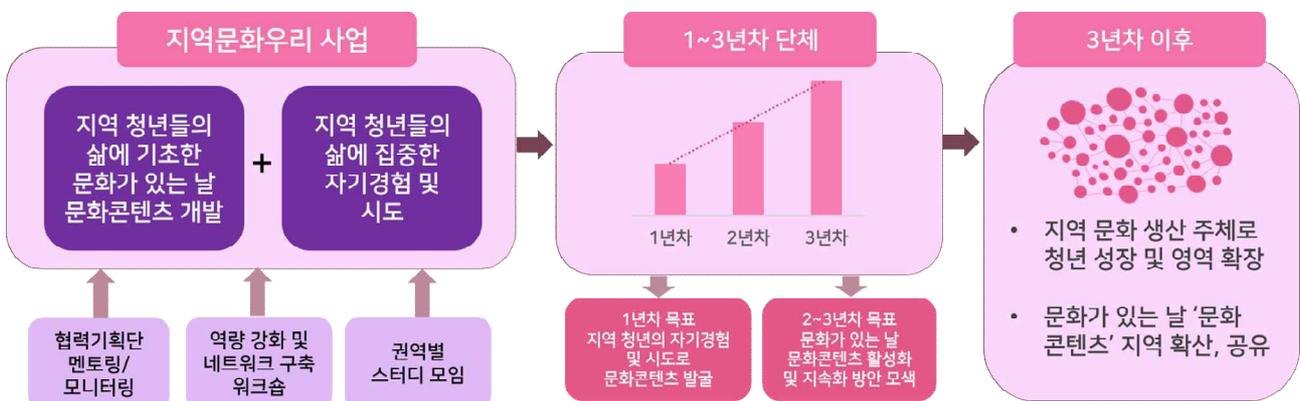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추진 방향

코로나19 관련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기본 원칙

-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관리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하므로, 새로운 일상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업기획을 권고함.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유연성을 요함.

○ 사업구조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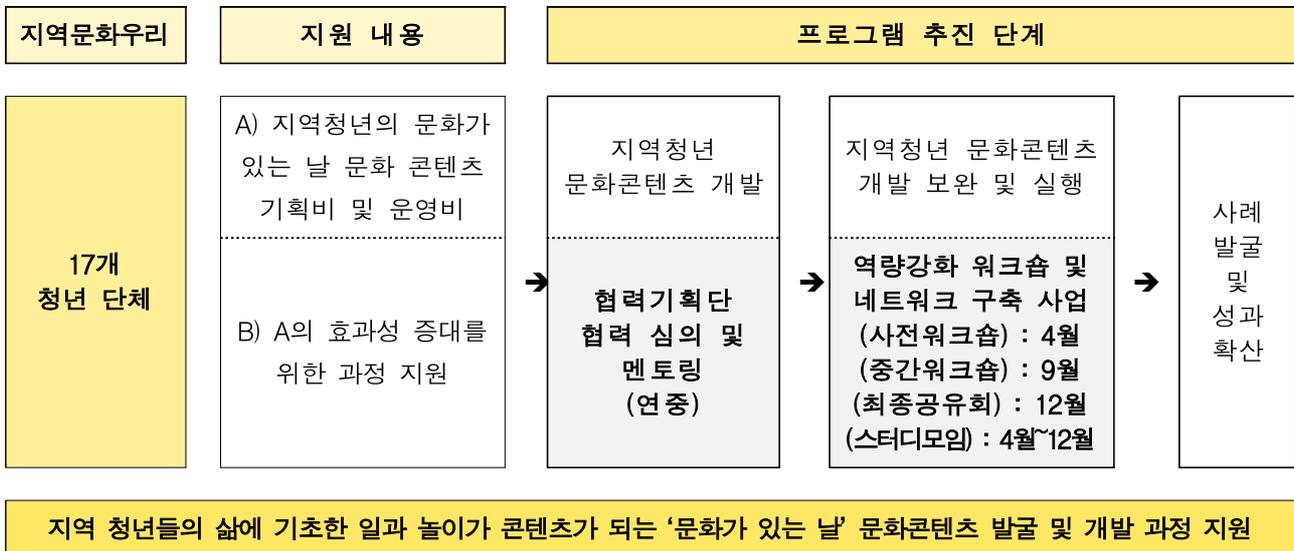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공모

- 공모명: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참여 단체 공모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지원사업 운영기간: 4월 ~ 12월(9개월)
- 공모기간: 2021년 2월 3일(수) ~ 2021년 2월 23일(화)
- 접수기간: 2021년 2월 5일(금) ~ 2021년 2월 23일(화) 18시까지
- 지원내용
 - (개발지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
 - (과정지원) 참여 단체 네트워킹 지원, 과정/활동 공유 워크숍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주 기획자로 제안된 3인 기획자 전원)
 - (연속지원) 연속 지원 단체 심의를 통해 최대 3년 지원
 - ※ 연속 지원 단체는 신규 단체 심의 전, '19년 ~ '20년도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 진행
 - (기획 및 운영비) 행사운영비, 기자재 및 임차료, 행사운영에 필요한 여비, 기획 사례비, 홍보비, 기록비 등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
 - ※ 기획사례비는 인당 총 예산 내의 10%이내 책정가능(주 기획자로 참여하는 주요참여인력 최대 3인에 한하여 인정)
- 지원규모: 17개 단체 선정(총 240,000천원 지원 / 1개 단체당 1천만원 ~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단체 등**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4항 / 만 나이 기준일(2021.01.01. 기준)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 사회적 경제 조직 가점 5점 부여(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단체)
 - ** 사업 운영 지역과 거주 지역이 동일해야 함(시/군/구 기준)
- 지원 조건
 - 지역 청년들의 삶에 기초한 일과 놀이를 찾아,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청년
 - 지역 청년 개인의 삶에서 발견한 콘텐츠를 지역과 공유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확산시키고 싶은 청년
 - 지역에서 자기 경험을 시도하고, 자기 비전을 확립하는 성장 과정으로 청년의 주체적인 ‘문화가 있는 삶’ 확산하고 싶은 청년
 - 지역 청년들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기존의 활동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하고 싶은 청년
 - 코로나19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전제하여 새로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청년

○ 지역문화우리 사례

지역문화우리 사례	
 <p>(경기 이천) 청년농부 토크콘서트, 케이팍스타 / 초록놀이터</p> <p>이천 귀촌 청년 농부들이 모임을 만들어, 개인의 일상과 주민들의 일상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 청년농부 토크콘서트 콘텐츠 개발</p>	 <p>(경기 동두천) 생활창작변방학당 / 변방의 북소리</p> <p>동두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거진 제작 및 생활창작변방학당 모임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 창작문화콘텐츠 개발 과정 지원</p>
 <p>(강원 강릉) 지누아리를 찾아서 / 무엇이든</p> <p>강릉 '지누아리'를 상징으로 청년들의 '지누아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영감을 노래, 그림, 글 공유회로 기록하여 공유회 추진</p>	 <p>(제주 제주) 예술과 함께하는 원도심탐방 프로그램 만들기 / 아트세크</p> <p>지역 작은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원도심 지도를 만들고, 작은 공간들끼리의 소규모 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p>

○ 사업 추진 흐름도



III 심의 개요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위원: 지역 문화, 청년 문화, 문화 기획, 청년 정책 등 관련 전문가 5인

구분	내용																		
연속지원 단체심의 (2~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방법: 1차 사업계획서 제출 후, 화상 인터뷰 심의 • 심의대상: '19년 청년문화우리, '20년 지역문화우리 참여 단체 대상(19개 단체 대상) • 심의일정: 2021.02.26.(금) 예정 • 선정규모: 총 7개 내외(총 지원 단체 중 약 40%) <p>※ 신규 단체 발표시 최종 선정 단체 발표 및 교부신청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p>																		
신규지원 단체심의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방법: 1차 심의(서류심의) - 피드백 후 사업계획 작성 - 2차 심의(심의워크숍)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의 단계</th> <th>심의 일정</th> <th>세부 심의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e나라도움 접수</td> <td>~2.23.(화)</td> <td>지원 서류 e나라도움 제출</td> </tr> <tr> <td>1차 심의</td> <td>3.3.(수)</td> <td>1차계획서 / 1차예산(안) 서류 검토</td> </tr> <tr> <td>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td> <td>~3.5.(금)</td> <td>1차계획서를 토대로 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 (1차 심의 선정 단체에 한함)</td> </tr> <tr> <td>2차 계획서 제출</td> <td>3.19.(금)</td> <td>서면 피드백을 받아, 1차계획서의 Part4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2차계획서+2차예산(안) 이메일 제출</td> </tr> <tr> <td>2차 심의 (심의워크숍 추진)</td> <td>3.24.(수)</td> <td>(전체공유) 2차계획서 전체 공유 (소그룹피드백) 2차계획서 관련 멘토링 (개별논의) 계획 수정 및 보완 논의 (전체공유) 수정 방향 전체 공유 (개별투표) 타 권역 선정 희망 단체 투표 (최종논의) 협력기획단 최종 논의</td> </tr> </tbody> </table> <p>※ 최종 선정 규모 1.5배수 내외를 1차 심의에서 선정하여 2차 심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공모에 참여한 단체 • 선정규모: 총 10개 내외(총 지원 단체 중 약 60%) 	심의 단계	심의 일정	세부 심의 내용	e나라도움 접수	~2.23.(화)	지원 서류 e나라도움 제출	1차 심의	3.3.(수)	1차계획서 / 1차예산(안) 서류 검토	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	~3.5.(금)	1차계획서를 토대로 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 (1차 심의 선정 단체에 한함)	2차 계획서 제출	3.19.(금)	서면 피드백을 받아, 1차계획서의 Part4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2차계획서+2차예산(안) 이메일 제출	2차 심의 (심의워크숍 추진)	3.24.(수)	(전체공유) 2차계획서 전체 공유 (소그룹피드백) 2차계획서 관련 멘토링 (개별논의) 계획 수정 및 보완 논의 (전체공유) 수정 방향 전체 공유 (개별투표) 타 권역 선정 희망 단체 투표 (최종논의) 협력기획단 최종 논의
심의 단계	심의 일정	세부 심의 내용																	
e나라도움 접수	~2.23.(화)	지원 서류 e나라도움 제출																	
1차 심의	3.3.(수)	1차계획서 / 1차예산(안) 서류 검토																	
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	~3.5.(금)	1차계획서를 토대로 협력기획단 서면 피드백 (1차 심의 선정 단체에 한함)																	
2차 계획서 제출	3.19.(금)	서면 피드백을 받아, 1차계획서의 Part4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2차계획서+2차예산(안) 이메일 제출																	
2차 심의 (심의워크숍 추진)	3.24.(수)	(전체공유) 2차계획서 전체 공유 (소그룹피드백) 2차계획서 관련 멘토링 (개별논의) 계획 수정 및 보완 논의 (전체공유) 수정 방향 전체 공유 (개별투표) 타 권역 선정 희망 단체 투표 (최종논의) 협력기획단 최종 논의																	

○ 심의기준(안)

평가항목	평가항목(배점)	심의 기준(안)
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모사업의 목적과 적절한가? • 지역 청년으로 개인적 삶의 고찰을 하고 있는가? • 목표 수립의 과정이 타당한가? • (연속단체) 전년도 사업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운영	독창성 및 창의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의 삶에 기초한 창의적 콘텐츠로 연결 될 수 있는가? • 지역에서의 삶의 새로운 시선과 해석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가?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속, 확장, 연계 가능한가? • 지역의 문화 생산 주체로서의 관계기반의 문화콘텐츠 개발 이 가능한가?
가산점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5점) 소멸위험지역 우대(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 지역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조직) • 소멸위험지역(진입단계~고위험) 지역 / 시군구 기준 (출처 : 2013-2018년 시군구및읍면동소멸위험지수_한국고용정보원)

※ 상기 내용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 용
사업 공고	2021.2.3.~2021.2.23.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		
e나라도움 접수	2021.2.5.~2021.2.23.	- 사업신청공문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연속심의	2021.2.26.(금)	- 연속심의(화상 인터뷰 심의)
↓		
신규단체 1차 심의 및 발표	2021.3.3.(수)~2021.3.5.(금)	- 1차심의(서류 심의)
↓		
서류 피드백 및 2차 계획 제출	1차 심의 종료 후	- 1차 서류 피드백
↓		
신규단체 2차 심의 및 발표	2021.3.24.(수)~2021.3.26.(금)	- 2차심의(심의 워크숍)
↓		
교부신청서 접수	~2021.4월 초	- 교부신청서 접수(e-나라도움)
↓		
1차 지원금 교부	~2021.4월 중	- 지원금 교부
↓		
사업실행	교부 완료 후 실행 가능	- 단체별 사업 추진

※ 상기 내용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2021년 2월 5일(금) ~ 2021년 2월 23일(화)
- 접수마감: 2021년 2월 23일(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 마감 시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함
 ※ 마감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전 제출 완료 확인 요망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공모 서류 일체
 ※ 모든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공문(자체 양식) 첨부파일명 : 01_지역문화우리_사업신청공문_단체명 ②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 받은 단체의 경우 인증서 추가 첨부) 첨부파일명 : 02_지역문화우리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지원신청서, 1차 사업계획서, 1차 예산안, 단체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첨2. 지원신청서 외 양식 첨부파일명 : 03_지역문화우리_지원신청서외서류_단체명 ☞ 제출 시, 한글 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문의내용	세부내용
<p>지원 신청 내용 ※ 지원 신청 요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 (재)지역문화진흥원 문날기획팀 임유라 • 전화번호 : 02-2623-3124 • 이메일주소 : yura@rcda.or.kr
<p>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1670-9595

V 지원 시 유의사항

1) 공모 및 선정 관련

- 선진지 견학, 일회성 행사 반복 프로그램 지양
- 접수 마감일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제출 불가
- 지원신청 시 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가산점 반영 불가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공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공모선정과 관련하여 외부청탁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음
- 최종 지원결정액이 당초 지원신청액 보다 감액될 수 있으며, 교부 신청 시, 이와 무관하게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선정 단체 의무 이행사항(사업 관리·운영 관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와 '사업별 운영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등록 등 운영 관리 필요 (해당 시스템 관련 추후 세부 사항 안내 예정)
- 부가세를 환급받는 일반과세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국고로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별도 절차(서약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제외 신고서 제출) 등을 따라야 함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진흥원과 필히 협의,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사업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 등은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 주 기획자 3인은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행사(교육, 권역별 스터디 모임 등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21년 변경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3) 사업 사후 관련

-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 검사 및 정산 추진(추후 안내)

※ 지원신청 제한 대상

-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시까지 교부 불가능함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 사업에 동일 프로그램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사업 수행 중이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단체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진흥원으로 통보된 단체·개인의 사업은 당해연도 잔여 수행기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1.1.(법률 제 17758호)]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1.1.(법률 제 17758호)]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공모 QnA

Q1. 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에서 사는 청년의 삶의 동기에 집중합니다. 본인의 삶과 일 속에서 흥미로운 요소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경험과 자기 비전을 지역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엔 청년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함께 지역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지역의 청년들이 삶에 기초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자기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여 지역 문화의 생산 주체로서의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발굴하여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예시1)**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청년 농부들이 각자 농사짓는 농작물을 활용하여 요리 콘텐츠, 공방 콘텐츠를 개발, 기획하여 지역과 함께 나누며 '문화가 있는 날' 확산
- **예시2)** 강릉의 청년들이 강릉의 특산물인 '지누아리'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지역과 개인의 생애를 담은 '지누아리'의 이야기를 작곡, 전시, 에세이로 기록하여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온라인 북토크 추진

Q2. 청년의 나이?

- 지역문화우리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3인의 주 기획자를 지원합니다. (만 나이 기준일은 2021/01/01입니다.)
- 3인의 주 기획자 외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제시된 나이를 준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중 1가지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3.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만 활동해야 하나요?

- 지역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는 활동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엔 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지향점 중 '일상성'으로 월별로 추진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은 주간엔 맞춰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월초 월별 추진계획 + 월말 월간 리포트(오픈채팅방 공유)로 상시적으로 일정은 변경하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Q4. 자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 개발 외의 진흥원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역문화우리>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 생산 주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본 콘텐츠 개발 외에도 **사전워크숍**(e나라도움 교육) + **중간워크숍**(콘텐츠개발중간워크숍) + **권역별 스터디모임**(기존에 <지역문화우리>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방안 논의 등) + **협력기획단 멘토링**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안에 참여한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각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들과, 개발한 콘텐츠를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더욱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협력 기획의 단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공모 신청 사전에 꼭! 공모안내문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5. 작년보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① 사업 내용

- 올해 변경된 사업의 내용은 사업의 목적입니다. 작년에는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적 접근 방법과 해석 과정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의 문화 생산 주체로서의 청년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며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들은 각자의 삶에 기초하여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지역과 공유하고 확산하게 됩니다. 보다 명확해진 목적으로 청년들은 <지역문화우리>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 진단과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나아가 지역의 주체로서의 성장하여, 개발시킨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재정립하였습니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개정안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교육 사이트 및 이수확인서 양식은 선정 단체들에게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③ '예술인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하여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어 예술인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작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들도 고용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역문화우리>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추가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적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련한 세부 자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Q6.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 본 사업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 지원으로 삶에 연계되어 진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과물은 '콘텐츠'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 대비 운영 실적에** 중점을 두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의 이용자·참여자 사업 후 체감효과 측정 결과 지역문화우리에 참여하는 청년 문화예술기획자들의 내적/외적 변화 지수는 **4.52점(5점 만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험/관심/의지 변화 지수는 **4.7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콘텐츠 개발로 활동 영역의 기초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자기다움을 갖춰서 더욱 확장된 활동을 해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좋은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